
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903 관 련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8월 7일

제 안 자 : 홍 국 표 의 원

1. 수정이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생활안정지원 사업 및 내용) 중 ‘월동대책비 지원’을 ‘월동대책비 및 폭염대비비 지원’으로 개정하여, 기후변화로 인한 계절별 위험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의 범위를 여름철까지 확대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계절별 위험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함.
- 다만 ‘월동대책비’와 같은 조항에 ‘폭염대비비’를 추가하는 방식은 서울시의 부가급여 사업으로 명시화될 수 있어 조례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.
- 또한 법정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, 신규사업을 추진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예상되므로 중복 지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.
- 따라서 수정안을 통해 현재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냉·난방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5조의 12호에 폭염 및 한파에 대한 긴급지원비를 신설하고 12호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13호로 수정함
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안 5조의 12호에 폭염 및 한파에 대한 긴급지원비를 신설하고, 12호 그밖에
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13호로 수정함
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수정안
제5조(생활안정지원 사업 및 내용)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다른 법 령에 따라 같은 지원이 되는 사람 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~ 7. (생 략) 8. <u>월동대책비</u> 지원 12. 그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	제5조(생활안정지원 사업 및 내용) ----- -----. ----- -----. 1. ~ 11. (현행과 같음) 8. 월동대책비 지원 <u>12. 폭염 및 한파에 대한 긴급지원 비</u> <u>13.</u>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5조 1. ~ 11. (현행과 같음)

12. 폭염 및 한파에 대한 긴급지원비

13. 그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수정안
제5조(생활안정지원 사업 및 내용)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다른 법 령에 따라 같은 지원이 되는 사람 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~ 7. (생 략) 8. <u>월동대책비</u> 지원 12. 그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	제5조(생활안정지원 사업 및 내용) ----- -----. ----- -----. 1. ~ 11. (현행과 같음) 8. 월동대책비 지원 <u>12. 폭염 및 한파에 대한 긴급지원 비</u> <u>13.</u>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